

# [내부감사] 2017년도 일반감사

번호	지적사항	지적내용	처분종류
1	정부 연구과제 사업관리 부적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연구사업을 재확인하여 연구노트 등에 누락 또는 미비된 사항을 수정·보완하도록 조치 (통보)</li> <li>- 간접비 비율 미준수 및 참여율 초과집행 등 업무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연구관리 업무 철저(주의)</li> </ul>	통보·주의
2	연구수당 집행 부적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연구수당을 외부 현물참여자를 포함하여 적정하게 재배분 및 「연구수당 지급 요령」에 맞게 재배분하여 지급(통보)</li> </ul>	통보
3	연구비 집행 계정대체 부적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사업비 집행 처리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계정에서 집행한 것으로 계정대체하는 경우 연구비 정산 시 불인정될 수 있으므로,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정대체를 허용하지 않도록 회계처리 업무 철저(주의)</li> </ul>	주의
4	자체연구사업 최종 연구보고서 관리 미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자체연구사업 최종보고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있는 직원들에게 최종보고서를 조속히 제출하도록 하는 등 자체연구사업 최종보고서 관리업무 철저(주의)</li> </ul>	주의
5	기관주요사업 평가위원 선정 부적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기관주요사업 평가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(2명) 주의 촉구(주의)</li> <li>- 주요기관사업 제반사항에 대한 심의·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때 평가대상 과제의 이해 관계자는 평가위원에서 배제하는 등 기관주요사업의 평가업무 철저(주의)</li> </ul>	주의

6	업체 기술지원 미수금 관리 부적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기술지원미수금이 발생하였음에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관련자 (4명) 주의 촉구(주의)</li> <li>- 채권 소멸시효과 완성된 기술지원미수금은 연구총괄심의위원회에 결손에 대해 심의할 수 있도록 보고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(통보)</li> <li>- 기술지원 시 청구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현금이 입금된 후 해당사업 실적에 반영되도록 사업관리제도 개선(통보)</li> <li>-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9개 업체 기술지원미수금 계 7,134,800원에 대해서는 납부최고 등 회수·관리 방안 마련(통보)</li> </ul>	통보·주의
7	발명신고 미이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특허 지분을 양도받고도 신고하지 않고 개인명의로 소유한 관련자 (1명) 주의 촉구(주의)</li> <li>- 위 관련자의 개인명의 소유 특허를 신고받아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(통보)</li> </ul>	통보·주의
8	기업체 기술자문에 대한 기술료 미징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연구원에서 업체에 기술자문 또는 기술지도를 실시하고도 외부강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기술료를 징수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 마련(통보)</li> </ul>	통보
9	물품반출 업무처리 부적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물품반출 승인 없이 반출한 물품을 반출승인 또는 반입 등 적정조치(통보)</li> <li>- 승인 없이 물품을 반출하는 일이 없도록 물품반출 업무 철저(주의)</li> </ul>	통보·주의
10	물품구매 수의계약 부적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의 성질상 동일 건의 물품을 분할 구입한 관련자(3명) 주의 촉구(주의)</li> <li>-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의 성질상 동일 건으로 취급할 수 있는 물품을 구입하면서 2천만 원 이하로 분할하여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물품구매 업무 철저(주의)</li> </ul>	주의

11	연구장비 구매 업무처리 부적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연구장비 구매업무를 부적절하게 수행한 관련자(1명) 주의 촉구(주의)</li> <li>-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의 성질상 동일 건으로 취급할 수 있는 연구장비를 구입하면서 3천만 원 이하로 분할하여 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장비구매 업무 철저</li> </ul>	주의
12	소액물품(300만 원 이하) 등 구매 업무처리 부적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소액물품 구매업무를 부적절하게 수행한 관련자(4명) 주의 촉구(주의)</li> <li>- 300만 원 이상의 물품을 300만 원 이하 여러 건으로 분할하여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 철저(주의)</li> </ul>	주의
13	현금집행 등 재료구매 부적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기관주요사업 사업비 집행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(3명) 주의 촉구(주의)</li> <li>- 업체로부터 재료 등을 구입하고 그 대금은 직원이 개인 현금 또는 개인 계좌에서 이체 결제한 후, 재정운영실에서 위 직원의 개인계좌로 입금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(주의)</li> </ul>	주의
14	해외출장 여비 이중 지급 부적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해외출장 지원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(3명) 주의 촉구(주의)</li> <li>- 해외출장 여비 이중 지급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방안을 강구하고, 해당 여행사 폐업으로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6,869,100원에 대해 조속히 처리방안 마련(통보)</li> </ul>	통보·주의
15	직원 급여지급 관련 미수금 관리 부적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미수금 회수 노력을 소홀히 한 관련자(2명) 주의 촉구(주의)</li> <li>- 20만원 이하 미수금 186건 9,950,153원은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자체적인 처리방안 마련(통보)</li> <li>- 급여관련 미수금은 회수방안 마련(통보)</li> <li>- 퇴직 30일전 퇴직 예고업무 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급여 관련 미수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방안 마련(통보)</li> </ul>	통보·주의

16	기업체 기술자문 출장신청 부적정	- 직원들이 민간 기업체에 기술지도 등을 목적으로 출장을 실시할 때 출장신청을 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출장신청 관리업무 철저(주의)	주의
17	창업보육센터 입주예치금 관리 부적정	- 창업보육센터 및 중소기업전용연구시설 등에 입주한 기업에게 입주예치금을 부족하게 징수하는 일이 없도록 창업보육센터 및 중소기업전용연구시설 관리업무 철저(주의)	주의
18	대학학자금 용자관리 부적정	- 대학학자금을 용자받은 직원들이 재직기간 중에 학자금 전액을 상환하도록 본인의 퇴직금 범위 내에서 대출하거나 퇴직 이전에 용자금 전액을 분할 상환하는 등의 대책 강구(통보) - 학자금 용자에 대해 개인별 용자내역 및 상환내역이 실시간 파악되지 않고 있으므로 학자금용자관리시스템 보완조치(통보)	통보
19	「유연근무제 시행 세부사항」 등 미비	- 연차 사용 갈음 및 임금 삭감 시에 총 근무시간 미달 직원들의 오해 및 마찰 등의 해소를 위해 총 근무시간 미달 예상 직원에게는 사전에 통보(핸드폰, E-mail 등)할 수 있는 전산 프로그램 조속히 마련(통보) - 「유연근무제 시행 세부사항」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근거 불분명, 1일 근무시간 인정 및 직원과의 협의 시간외 추가시간 근무자의 임금단가 적용기준 등 미비사항 보완(통보)	통보
20	대회의실 등 회의실 관리 미흡	- 유형자산인 대회의실 등을 사용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외부기관에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유형자산 관리업무 철저(주의)	주의